

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

<목 차>

1. 식용란 선별포장업자의 소독 및 방역시설 설치 의무

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	소관부처	농림축산식품부	작성 자	이름	박경일
	담당부서 (과)	방역정책국		직급	사무관
	국장	김대균		연락처	044-201-2520
	과장	최명철		이메일	nh5685@korea.kr

정책책임자 직위

성명  (자명)

< 규제 개요 >

기본 정보	1.규제사무명	식용란 선별포장업자의 소독 및 방역시설 설치 의무			
	2.규제조문	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8 마.			
	3.위임법령	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			
	4.유형	신설	5.입법예고	2020. 1.23.~2. 5.	
규제의 필요성	6.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	○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식용란선별포장업이 신설('17.10.24.)됨에 따라 농장,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 인·허가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따라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음 ○ 살충제 계란사태('17.8월) 이후 유통단계 살충제 검사 확대, 안전 기준 위반농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불안 해소를 위해 투명한 정보 제공 및 유통구조 개선 추진 - 가정용 계란은 선별·세척 설비를 갖춘 식용란선별포장업체(GP)를 통해서만 유통되도록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○ 가정용 계란의 식용란선별포장업자에 의한 유통 의무화에 따라 다수의 식용란 운반차량이 식용란선별포장업체에 출입할 것으로 예상되며, 현재 식용란선별포장업체에 대한 시설기준에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에 대한 기준이 없어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소독 및 차단방역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식용란 선별포장업자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 의무를 부여 필요가 있음			
	7.규제내용	○ 식용란 선별포장업자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의무 부여			
	8.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	○ 식용란 선별포장업 허가업체 : 115개			
	9.도입목표 및 기대효과	○ 식용란 선별포장업자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에 대한 설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철저한 소독 및 방역 조치를 수행하도록 하여 가축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			
규제의 적정성	10.비용편익분석 (단위:백만원)		비용	편익	순비용
		피규제자	575	0	575
		피규제자 이외	0	0	0

	11.영향평가 여부	기술영향평가	경쟁영향평가		중기영향평가
		해당없음	해당없음		해당없음
기타	12.일몰설정 여부	해당없음			
	13.우선허용· 사후규제 적용여부	(자동입력)			
	14.비용관리제 (단위:백만원)	적용여부	비용	편익	연간균등순비용
			575	0	575

<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			
<u><신 설></u>	[별표 1의8] 마목 <신 설>			
	마. 식용란 선별포장업자			
	<table border="1"> <tr> <td data-bbox="813 389 901 1144">소독 시설</td><td data-bbox="901 389 1453 1144"> (1) 출입구에 차량 외부, 바퀴, 흙받이 등을 세차·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, 2대 이상의 고압분무세척기를 갖추어 둘 것 (2) 작업장, 창고, 관리사무실 등의 출입구에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(3) 난좌, 파레트, 합판 등 식용란 운반에 사용되는 자재를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둘 것 (4) 출입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(5) 방문차량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</td></tr> <tr> <td data-bbox="813 1144 901 2063">방역 시설</td><td data-bbox="901 1144 1453 2063"> (1) 해당 시설의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·문 등의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. 다만,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별도 시설을 설치하여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. (2) 사람, 차량,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도록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할 것. 다만, 고도 차이, 개천,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. (3)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입구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울타리·담장 등에 외부인 출입통제 안내 </td></tr> </table>	소독 시설	(1) 출입구에 차량 외부, 바퀴, 흙받이 등을 세차·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, 2대 이상의 고압분무세척기를 갖추어 둘 것 (2) 작업장, 창고, 관리사무실 등의 출입구에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(3) 난좌, 파레트, 합판 등 식용란 운반에 사용되는 자재를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둘 것 (4) 출입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(5) 방문차량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	방역 시설
소독 시설	(1) 출입구에 차량 외부, 바퀴, 흙받이 등을 세차·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, 2대 이상의 고압분무세척기를 갖추어 둘 것 (2) 작업장, 창고, 관리사무실 등의 출입구에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(3) 난좌, 파레트, 합판 등 식용란 운반에 사용되는 자재를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둘 것 (4) 출입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(5) 방문차량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			
방역 시설	(1) 해당 시설의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·문 등의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. 다만,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별도 시설을 설치하여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. (2) 사람, 차량,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도록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할 것. 다만, 고도 차이, 개천,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. (3)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입구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울타리·담장 등에 외부인 출입통제 안내			

현행	개정안
	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출입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(4) 종계업 또는 닭 사육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그 종계업 또는 닭 사육업의 시설 중 종란이나 달걀을 집란하거나 보관하는 시설의 일부를 이용하고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출입구를 가축사육시설의 출입구와 서로 분리할 것. (5) 종계업 또는 닭 사육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그 종계업 또는 닭 사육업의 시설 중 종란이나 달걀을 집란하거나 보관하는 시설의 일부를 이용하고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용란 선별포장업의 입구에 기후에 관계없이 농장종사자, 방문자 등 출입자가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복·신발·장갑을 구비하고, 대인소독, 신발 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, 부스,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된 방역실을 설치할 것 (6) 약품, 소형 기자재,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이용할 수 있는 물품반입창고를 설치할 것. 다만, 기자재, 소모품 등이 소량인 경우 식용란선별포장업 입구에 방역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.

I. 규제 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

1.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

- 식용란 선별포장업이 신설*('19.4.25.)되어 가정용 계란으로 유통·판매 하려는 계란은 반드시 식용란선별포장업체에서 선별·포장 처리되어야 함

* 식용란선별포장업이란 식용란 중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·세척·건조·살균·검란·포장하는 영업으로 '17.10.24일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에 관련 규정 신설

- 가정용 계란의 유통 의무화에 따라 다수의 계란운반차량이 식용란 선별포장업체에 출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, 현재 식용란 선별포장 업체에 대한 시설기준에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에 대한 기준이 없어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소독 및 차단방역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식용란 선별포장업자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 의무를 부여 필요가 있음

- 구제역, AI,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은 발생예측이 어렵고 발생할 경우 대규모 살처분, 이동제한, 소독 등으로 막대한 방역 비용이 소요되어 축산업계 전반에 큰 손실*을 야기하므로 예방 및 발생 시 신속한 확산 방지가 중요

* 구제역, AI 등 가축전염병 상시 발생에 따른 생산성 악화로 낙농, 육우, 양돈 산업의 생산액 10% 감소시 생산유발액 감소 2조 3,849억원, 부가가치 감소 5,608억원, 고용유발 감소 29,487명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(농촌경제연구원)

- 농장,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 인·허가시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에서 규정한 시설기준에 따라 해당시설에 소독 및 방역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

-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등 축산관계시설에서 수행되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소독 및 차단방역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독 및 방역시설의 설치 의무를 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

2.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

① 대안의 비교

o 규제대안의 내용

규제대안1	대안명	식용란 선별포장업자의 소독 및 방역시설 설치
	내용	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식용란 선별포장업자는 해당시설에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설치할 의무 규정을 마련하여 철저한 소독 실시 및 차단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
규제대안2	대안명	
	내용	

o 규제대안의 비교

구분	장점	단점
현행유지안	-	식용란 선별포장업자의 소독, 방역관리가 미비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짐
규제대안1	식용란 선별포장업자의 철저한 소독 실시 및 차단 방역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음	-
규제대안2		

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

이해관계자명	주요 내용	조치결과
소비자, 생산자단체 등	식품안전관리개선 TF회의('17.9~12월) ※ 관계부처 회의(6회), 민관합동 현장방문(3회), 전문가 자문(11회), 실무회의(31회)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쳤음	제도의 필요성 공감,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 마련('17.12월)

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

- o 가정용 계란의 식용란선별포장업자를 통한 유통 의무화에 따라 다수의 계란운반차량이 식용란선별포장업체에 출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, 현재 식용란선별포장업체에 대한 시설기준에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이 없어 방역 관리에 부실 우려됨

-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식용란 선별포장업자로 하여금 해당시설에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설치할 의무 규정을 마련하여 철저한 소독 실시 및 차단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

3. 규제목표

-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식용란 선별포장업자에게 해당시설에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설치할 의무 규정을 마련하여 철저한 소독 및 방역 조치를 수행하도록 함

II. 규제의 적정성

1. 목적·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

- 구제역,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축산관계시설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소독 및 차단 방역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업의 신고 또는 허가시 시설기준으로 갖추도록 한 소독 및 방역 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효과적인 소독 및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식용란 선별포장업이 도입됨에 따라 기존의 축산관계시설과 동일한 수준의 소독·방역시설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합리적인 수단임
- 특히, 신규 도입되는 식용란 선별포장업체에서의 소독 및 차단방역 소홀 등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체는 물론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야기함

2.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

영향평가			시장유인적 규제설계	일몰설정 여부	우선허용· 사후규제
기술	경쟁	중기			
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

○ 영향평가

- 기술규제영향평가

해당없음

- 경쟁영향평가

해당없음

- 중기영향평가

해당없음

o 기타 고려사항

- 시장유인적 규제설계

국민의 생명, 건강, 안전과 관련된 규제에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

- 일몰설정 여부

국민의 생명, 건강, 안전과 관련된 규제에 일몰설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

- 우선허용·사후규제 적용여부

국민의 생명, 건강, 안전과 관련된 규제에 우선허용·사후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

3.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

o 해외사례

미국, 유럽 등 축산 선진국은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·사람·물품에 대한 소독을 위한 소독설비 및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는 방역시설 등에 대한 기준을 관련법규에 마련하여 설치하도록 의무를 주고 있으며, 해당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,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손상된 부분을 수리하도록 규정함

o 타법사례

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식용란 선별포장업자의 시설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음

☐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기준

- 건축물의 위치
-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
- 작업장 바닥·내벽 및 천정 ③
- 작업장 밝기(220룩스 이상)
- 환기시설, 방충·방서 시설
- 식용란취급시설(기계·기구류 등) 용기 규격에 적합한 것
- 급수시설, 화장실, 창고시설
- 검란기(부패된 알, 혈액이 함유된 알, 난황이 파괴된 알 등 식용에 부적합 알을 검출하는 기기를 말한다)·파각검출기·중량선별기·세척기·건조기·살균기 등 식용란의 선별 및 포장에 필요한 장비나 시설
- 식용란 운반 장비(지게차·컨베이어시스템 등)
- 식용란 껍데기 및 포장 인쇄장비
- 작업장 냉방시설 설치(15℃ 이내 유지)
- 작업장은 자동화시설 설치(시간당 2만개 이상 처리 권장)
- 식용으로 부적합 식용란을 폐기할 수 있는 전용 폐기용기
-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적합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운반차량을 갖출 것

4. 비용편익 분석

<규제대안 1 : 식용란 선별포장업자의 소독 및 방역시설 설치>

① 비용편익분석 : 피규제 기업·소상공인 직접비용 575백만

분석기준년도	규제시행년도	분석대상기간 (년)	할인율(%)	단위
2020	2020	1	4.5	백만원, 현재가치

규제대안 1 : 식용란 선별포장업자의 소독 및 방역시설 설치

영향집단	비용	편익	순비용
------	----	----	-----

피규제 기업 · 소상공인	직접	575		575
	간접			
피규제 일반국민				
피규제자 이외 기업 · 소상공인				
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				
정부				
총 합계		575		575
기업준비용		575	연간균등준비용	575

Ⅲ. 규제 의 실효성

1. 규제의 순응도

○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

가금농장, 식용란 수집판매업자 등의 출입이 잦은 축산관계시설이므로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막기 위해 소독 및 차단 방역 수행을 위하여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소독 및 방역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, 신규업종으로 도입된 식용란 선별포장업자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통한 관련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피규제자가 준수할 가능성이 높음

2. 규제의 집행가능성

○ 행정적 집행가능성

소독 및 방역 시설의 설치는 식용란 선별포장업자가 수행해야 할 사항으로, 행정적 집행을 위한 추가 인력 및 조직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

○ 재정적 집행가능성

규제 집행에 대한 예산 추가 소요는 없음

IV.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

1. 추진 경과

-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 마련('17.12월)
-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('19.7.28.), 시행('20.2.28.)

2. 향후 평가계획

- 식용란 선별포장업자에게 인·허가시 갖추도록 한 소독 및 방역 시설의 설치여부 및 정상 작동여부 등의 정기적 관리·감독 추진

3. 종합결론

- 구제역·AI 등 가축전염병은 발생예측이 어렵고, 발생할 경우 대규모 살처분, 이동제한, 소독 등으로 막대한 방역비용이 소요되어 축산업계 전반에 큰 손실*을 야기함

* 구제역, AI 등 가축전염병 상시 발생에 따른 생산성 악화로 낙농, 육우, 양돈 산업의 생산액 10% 감소시 생산유발액 감소 2조 3,849억원, 부가가치 감소 5,608억원, 고용유발 감소 29,487명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(농촌경제연구원)

- 정부는 지속적으로 구제역·AI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백신, 검진, 방역·소독차량 및 장비, 긴급방역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
-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등 축산관계시설에서 수행되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소독 및 차단방역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독 및 방역시설의 설치 의무를 부여하여 축산관계시설에서의 효과적인 소독 및 차단방역을 통해 축산업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규제로 판단됨

별 첨
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
가. 대안별 분석 비교표

분석기준년도	규제시행년도	분석대상기간 (년)	할인율(%)	단위
2020	2020	1	4.5	백만원, 현재가치
규제대안1 : 식용란 선별포장업자의 소독 및 방역시설 설치				
영향집단		비용	편익	순비용
피규제 기업 · 소상공인	직접	575		575
	간접			
피규제 일반국민				
피규제자 이외 기업 · 소상공인				
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				
정부				
총 합계		575		575
기업순비용		575	연간균등순비용	575

나.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·편익 분석 결과

<규제대안1 : 식용란 선별포장업자의 소독 및 방역시설 설치>

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:

☐ 직접비용

(정량)세분류	식용란 선별포장업자
활동제목	소독 및 방역시설 설치
비용항목	설비
비용	575,000,000
일시적/반복적	일시적
산식	설비비용 [구매비용(원)(5000000) X 연간 구매 횟수(1) X 피규제자 수 (115)]
근거설명	*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비용 : 지자체별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지원사업 단위사업액 평균 기준 ** 식용란 선별포장업자 115개소

☐ 간접편익

(정성)세분류	일반국민
활동제목	
편익항목	
일시적/반복적	반복적/
분석	* 2010년 11월에 발생한 구제역의 경우 살처분 보상, 방역비, 수매, 생활안정자금 등 정부 재정지출액은 3조 391억원 소요, 살처분&#8228;매물에 의한 사육두수 감소율은 낙농 8.5%, 한육우 3.9%, 양돈 33.6%에 이르며, 이러한 감소율을 토대로 산업연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, 생산유발 감소액은 4조 1,467억원, 부가가치유발 감소액은 9,876억원, 고용유발 감소효과는 4만 9,425명으로 계측 * 2008년 고병원성AI발생으로 인한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 등으로 가금류 산업의 생산가공유통소비 등 단계별로 발생한 경제적 총 피해액은 약 6,488억원으로 추정됨(축산 방역체계 개선방안, KREI, 2011)
근거설명	* 2008년 고병원성AI발생으로 인한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 등으로 가금류 산업의 생산가공유통소비 등 단계별로 발생한 경제적 총 피해액은 약 6,488억원으로 추정됨(축산 방역체계 개선방안, KREI, 2011)